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95
----------	----

제출년월일 : 2023. 3.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모사업 관리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다.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안 제6조)
- 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바. 의회 설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사.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2.2. ~ 2023.2.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778(2023.2.1.)호)

3) 부패영향평가 : 없음(기획실-1778(2023.2.1.)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5513(2023.2.10.)호)

5)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 없음(행정과-3631(2023.2.8.)호)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4. 부서 간 협의 여부
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설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설명은 의원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
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및 여비 등
- 공모선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전문가 자문수당 및 여비, 공모선정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장 주 현 관
연락처	(033) 330 - 2496